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49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78	조인철의원 등 12인	2025. 11. 28.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3. 31)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2214992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5. 12. 8.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3. 31)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나. 제 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는 위 2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5. 14.)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범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
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
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다음</u> <u>각 호의 자가 수사·재판절차</u> <u>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u> <u>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u> <u>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u> <u>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u> <u>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u> <u>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u> <u>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u> <u>수 있다.</u> 1. <u>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u> 2. <u>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u> <u>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u> <u>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u>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u> <u>항의 죄를 범한 자</u>